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666 제출연월일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,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,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,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"을 "건강에 관한 정보(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),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「여권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(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)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제2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제2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① -----정보의 처리) ① 공제회(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 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 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「개인정 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 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 강에 관한 정보(제1호부터 제3 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), 할 수 있다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「여권 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(제2호의 사무로 한정 한다)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 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-----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